

「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미시 농특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판매촉진 등(안 제3조~제4조)
-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(안 제5조)
 -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
- 직거래장터 개설·운영 및 위원회 설치 등(안 제6조~제18조)
 - 직거래장터 위치 및 사업내용(안 제6조~제7조)
 -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 설치, 구성, 기능, 회의, 운영(안 제8조~제12조)

- 직거래장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의무 및 관리 사항(안 제13조~1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당초 조례는 농업인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